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박균택·박해철·윤후덕
김정호·김한규·이건태
허영·김동아·박정
이광희·김남희·임미애
한민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.

그러나,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(이른바 ‘사실상의 탈옥수’) 수가 2021년 기준 약 5,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,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,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·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.

한편,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,697억 원에서 2025

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,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,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,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, 임의제출물 등 압수,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75조제1항).
- 나.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·발부받아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75조제2항).
- 다. 1,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,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·발부받아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77조제6항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75조(형집행장의 집행) ①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106조, 제107조,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, 제114조,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116조,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, 제135조, 제137조, 제138조, 제140조, 제141조, 제218조의2, 제333조제2항, 제486조를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7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⑥ 검사는 1,000만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,000만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제106조, 제107조,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, 제114조,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, 제135조, 제140조, 제141조, 제333조제2항, 제48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475條(刑執行狀의 執行) 前2條의 規定에 依한 刑執行狀의 執行에는 第1編第9章 被告人의 拘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.</p>	<p>제475조(형집행장의 집행) ①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② 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106조, 제107조,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, 제114조,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116조,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, 제135조, 제137조, 제138조, 제140조, 제1</p>

第477條(財産刑等の 執行) ① ~

⑤ (생 략)

<신 설>

41조, 제218조의2, 제333조제2항, 제486조를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第477條(財産刑等の 執行) ① ~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검사는 1,000만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,000만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제106조, 제107조,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, 제114조, 제1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, 제135조, 제140조, 제141조, 제333조제2항, 제486조를 준용한다.

⑥ (생략)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